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3. 19.(목)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6. 3. 3.

나. 제안자 : 허식 의원 외 7명

다. 회부일자 : 2026. 3. 6.

라. 상정일자 : 제30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 3. 19. 상정·의결)

- 제안설명 : 허식 의원
- 검토보고 : 윤혜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바른 역사관 형성을 위한 교육기반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바로알기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6년 3월 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역사바로알기교육의 기본방향을 신설하여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이해와 비판적 사고 및 실천적 역량 함양 등을 규정하고 관련 정책의 목적과 지향점을 보다 구체화 하였고,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명시하여 국가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역사바로알기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의 정합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적 의미가 있음.
- 또한 현재 학교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역사바로알기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 및 예산 확보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학교장의 협력을 명문화함으로써 책임 주체와 역할을 명확히 한 점은 행정적 실행력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2025년~2026년 역사바로알기교육 추진 현황>

년도	사업명	주요 내용	대상/기관	예산 (천원)
2025년	학교로 찾아가는 역사바로알기	·찾아가는 태극기 교육 ·독립운동사 바로알기 교육	초·중·고 희망 학급	91,960
	[신규] 문화·예술 체험 역사바로알기	·독립운동사 뮤지컬 체험 교육	학생교육 문화회관	50,000
		·독립운동사 사진전 체험 교육	학생, 시민	29,000
	[확대] 역사바로알기 교육 강사 역량 강화	·수업안 및 수업시연 컨설팅 ·교육 운영 평가회	교육 강사	160
	소계			

년도	사업명	주요 내용	대상/기관	예산 (천원)
2026년	찾아가는 역사 바로알기 교육	·찾아가는 국가 상징물 교실 ·찾아가는 독립운동사 교실	초·중학교 희망 학급	92,140
	일제 잔재 청산 지원 ¹⁾	·교수학습자료 개발	교육지원단	4,800
		·자문위원회 운영	자문위원회	1,480
	[신규] 독립운동가 바로알기 교육	·인천지역 독립유공자 선정	연구기관	40,000
		·독립유공자 출신학교 현판식	대상학교	10,000
		·현판 활용 교수학습자료 개발	현장지원단	4,000
	소계			

- 아울러 역사바로알기교육활성화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기본 계획 수립 및 사업 운영 등에 대한 자문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임.
- 다만 제6조제2항제5호 「역사 왜곡 실태에 대한 이해 및 비판적 검토를 위한 교육 운영」 조항은 역사 왜곡에 대한 판단이나 논점이 특정 가치관이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육 내용과 운영 방향을 둘러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내용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1) 교육과정 연계 일제 잔재 청산 교육지원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학교 내 조형물(일본 잔재)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 운영

- 제6조제2항제6호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과 공헌의 이해²⁾ 조항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과 공헌에 대한 이해를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한 분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한 취지로 보임. 다만 실제 교육 운영 과정에서 국가 교육과정의 범위내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역사바로알기교육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다만,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역사 인식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관점이 공존하는 영역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가 교육과정의 범위와 취지를 준수하는 가운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문적 다양성 확보,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과 균형성, 실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수정동의

가. 찬성(이용창, 조현영, 정종혁, 임지훈)

나. 반대(없음)

2)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조례안 제6조제2항과 관련하여 역사 왜곡의 판단이 특정 가치관이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학교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6호를 제5호로 안 제7호를 제6호로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안 제6조제2항제6호를 안제6조제2항제5호로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제7호를 안제6조제2항제6호로 수정한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4명, 찬성: 4명)

8. 기타: 해당없음

-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4조(역사바로알기교육 기본계획)</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신설></p> <p><신설></p> <p>5. (생략)</p>	<p><u>제6조(역사바로알기교육 기본계획)</u>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국내외의 역사 왜곡 실태에 대한 이해 및 비판적 검토를 위한 교육 운영</u></p> <p>6. 「국가보훈 기본법」 <u>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희생과 공헌의 이해를 위한 역사교육 운영</u></p> <p>7. (현행 제5호와 같음)</p>	<p><u>제6조(역사바로알기교육 기본계획)</u>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삭제></p> <p>5. (개정안 제6호와 같음)</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2조를 제3조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기본방향) ① 역사바로알기교육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와 실천적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② 역사바로알기교육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탐구, 이해, 분석 등의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추진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6조 및 제13조로 하며,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교육감이 추진하는 역사바로알기교육 사업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중전의 제4조)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희생과 공헌의 이해를 위한 역사교육 운영

제7조를 제16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역사바로알기교육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역사바로알기교육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사업 기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7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부위원장은 1명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역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교육기관 또는 교육 관련 단체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건강상의 이유, 직무 관련 비위 사실,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

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역사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13조(중전의 제5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역사바로알기교육·연수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역사바로알기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지원 및 관리) ① 교육감은 학교 역사바로알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교부, 관리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2조 (생략)</p> <p><신 설></p>	<p>제2조(기본방향) ① <u>역사바로알기 교육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와 실천적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u></p> <p>② <u>역사바로알기교육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탐구, 이해, 분석 등의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추진한다.</u></p> <p>제3조 (현행 제2조와 같음)</p> <p>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u>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u></p> <p>② <u>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u></p> <p>③ <u>학교장은 교육감이 추진하는 역사바로알기교육 사업이 학교의</u></p>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역사바로알기교육 기본계획)</p> <p>① (생략)</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u>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u></p> <p>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u><삭제></u></p> <p>제6조(역사바로알기교육 기본계획)</p> <p>① (현행 제4조와 같음)</p> <p>②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희생과 공헌의 이해를 위한 역사교육 운영</p>

현 행	개 정 안
<p>5. (생략)</p> <p><u><신설></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u>제7조(역사바로알기교육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역사바로알기교육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u> <u>2.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사업 기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u> <u>3. 그 밖에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p><u><신설></u></p>	<p><u>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7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부위원장은 1명으로 한다.</u></p> <p><u>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u>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u></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신설></p>	<p>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p> <p>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둔다.</p> <p>② 간사는 역사교육 관련 업무 담당</p>

현행	개정안
<p>제5조(사업) 교육감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6.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6조(지원) 교육감은 학교 역사바로알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p>	<p><u>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u></p> <p>제13조(사업) (현행 제5조와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역사바로알기교육·연수</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제14조(협력체계 구축) <u>교육감은 역사바로알기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u></p> <p>제15조(지원 및 관리) ① <u>교육감은 학교 역사바로알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교부, 관리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u></p> <p><u><삭제></u></p>

현행	개정안
<p><u>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p><u>제7조</u> (생략)</p>	<p><u>제16조</u> (현행 제7조와 같음)</p>